

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134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년 8월 일

발 의 자 : 박 선 미 의원

1. 제안이유

- 가.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(대통령령 제32168호)이 개정되어 여비 부정 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금액이 상향됨에 따라, 이를 반영하여 여비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무원 복무 기강을 확립하려는 것임.
- 나. 아울러,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쉽게 순화하는 등 조례 내 조문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금액을 현행 2배에서 5배로 상향함
(안 제4조제1항, 제3항)
- 나. 조례의 적용 대상을 ‘하남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’으로 명확히 규정함
(안 제2조제1항)
- 다. 그 밖에 띄어쓰기, 문장부호, 어려운 용어 등 조문을 알기 쉽게 정비함
(안 제3조, 제4조, 제6조)

3. 검토의견

가. 입법 필요성

- **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:** 대통령령 제32168호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은 공무원 여비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부정수령을 근절하기 위해 2021년 12월 9일부로 가산징수 금액을 2배에서 5배로 상향 조정하여 시행하고 있음. 이에 따라 본 조례 역시 상위법령과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법체계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개정이 필요함.
- 또한, 조례의 적용 대상을 ‘하남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’으로 명확히 규정하고(안 제2조제1항), 법제처의 ‘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’에 따라 불필요한 한자어 정비 및 띄어쓰기 등 표기법을 명확히 하는 것은 조례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임.

나. 입법 적정성

- 공무원의 여비 부정수령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공직 기강을 확립하고, 시의회 공무원의 청렴성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

다. 법적 타당성

- **소관 사무 원칙:**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「지방공무원법」 제59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, 본 개정안은 하남시의 자치사무 권한 범위에 속함.
- **법령 범위 준수:** 상위법령인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, 법령의 위임 범위를 준수하고 있음.

라. 결론

- 검토 결과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에서 적정하게 개정되는 것으로 사료됨.